


창의, 실용, 현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선진일류경제 구현				 기획재정부 <small>MINISTRY OF TREASURY AND FINANCE</small>
보도자료				
보도일시	2008. 10. 31(금) 조간			
배포일시	2008. 10. 30(목) 10:0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사업평가과	
담당과장	임종성 (2150-5430)	담당자	남광현 사무관 (2150-5433)	

제목: 농지규모화사업 등 3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

-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재정운용과정에서 성과점검이 필요한 농지규모화사업 등 3개 재정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*에 따라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음
 - * 국가재정법 제8조제6항 :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.
- 농지규모화사업(농림수산식품부)은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농가당 농지규모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 - * 중점 점검사항 : 주요 성과, 지원조건의 적절성, 관련사업과의 연계여부 등
-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(중소기업청)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 - * 중점 점검사항 : 주요 성과, 과제선정과정과 기술료 징수방식의 적절성 등
-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(농림수산식품부)은 부실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
 - * 중점 점검사항 : 경영개선 성과, 운영과정의 문제점 등
- 금번 심층평가는 KDI 주관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작년 12월부터 실시됨
 -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해당부처의 사업추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심층평가 추진단에서 평가내용을 점검함

□ 주요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

농지규모화사업

- ① 2.5ha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와 56세 이상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*은 투자 효율성을 저하시키고, 4ha 이상으로 농지규모를 확대할 경우 고정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
 - * 생산비 절감효과(70대 농업인과 비교) : 40대 △24.2%, 50대 △15.7%, 60대 △6.7%
 - 따라서,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.5~4ha를 소유한 55세 이하의 농가를 중점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
- ② 금리대비 지가상승을 고려시 현행 지급단가(평당 3만원)에 대한 인상요구는 타당성이 없고, 지가 하락시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정부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10%의 농가부담을 폐지('08년)한 것은 부적절함
 - 현행 지원단가 평당 3만원을 유지하고, 10%의 농가부담을 폐지한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
- ③ 농지은행사업 및 경영이양직불사업과는 쌀전업농 육성이라는 사업목적이 같고, 사업내용 중에서 유사 중복가능성, 연계성, 보완성 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'13년까지는 농지규모화사업의 임대차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의 임대수탁사업을 통합·운영하고,
 - 농지규모화사업이 종료되는 '13년 이후 농지은행사업의 4개 사업*으로 통합·운영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
 - * 농지규모화의 유지·존속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경영희생지원사업, 농지시장안정화를 위한 농지매입·비축사업,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사업



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

- ① 정부지원이 단기적인 기업의 기술개발, 핵심기술확보, 신제품 개발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능력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(설문조사결과)
 - 그러나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(계량분석결과)
- ② 현재의 지원대상 과제선정은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초점을 두고 지원대상기업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
 - 따라서, 과제 선정과정에서 대안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보유여부 등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
 - 특히, 기술개발역량은 있으나 R&D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기술기업의 경우, 벤처캐피탈이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벤처캐피탈과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
- ③ R&D 과제의 높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, 사업화 및 매출로의 연계가 미흡
 -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성공 이후 사업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
 - 또한, 과제 선정시부터 기술개발 종료 이후 사업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
- ④ 성공과제로 판정된 경우 출연금의 20%를 3년 분할 납부하는 현행 '출연정율' 방식의 기술료 제도는 창출된 수익에 대한 기술료 징수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
 - 기업들은 정부 출연금 중에서 기술료 납부액을 사전에 제외하고 기술개발 수행
 - 따라서, 사전협약에 의해 수익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'매출정률' 방식의 기술료 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
 - 연구관리기관의 행정부담, 기술가치평가의 어려움 등 고려



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

- 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47개 수협의 수익구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결과, 지난 4년간의 경영정상화 과정이 개별수협의 수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
 - 특히, 정상화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상호금융의 손익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지 못함
- ② 일선수협의 부실은 일선수협의 부실운영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의 부적절한 운영 등에도 기인하여 발생
 - 따라서, 일선수협은 정책자금 대출 접수·지급 등 단순 창구역할만 수행하고 대출심사 등 정책자금 집행기능을 수협 중앙회로 이관할 필요
- ③ 정책자금 운영에서 발생한 부실을 정책자금의 집행독려, 부채경감대책 등 정부의 과실부분과 대출심사 및 채권관리 소홀 등 일선수협의 과실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함
 - 따라서, 정책자금 부실채권에 한정하여 필요시 재정지원을 검토하되, 정책자금 부실채권 정리 후 발생하는 추가부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
- ④ 상당수의 부실우려수협*과 부실수협**은 자체적으로 회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
 - * 부실우려조합(11개) : 해남군, 군산시, 고흥군, 진도군, 소안, 서천군, 강진군, 속초시, 제3·4구 잠수기(여수), 전남정치망(여수)
 - ** 부실조합(6개) : 완도군, 장흥군, 흑산도, 삼척, 동해시, 강원고성
- 수협 중앙회의 책임하에 회생가능성이 낮은 수협에 대하여 신용사업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제사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
- 다만, 어업인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도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



- 기획재정부는 금번 심층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제도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, 그 결과를 '1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임
- 관계부처는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'10년 예산요구에 반영할 예정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참고 1

3개 재정사업 개요

□ 농지규모화사업

사업목적	○ 농가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 집단화를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			
사업기간	○ '90 ~ 계속('07년까지 기투자액 5조 2,519억원)			
사업규모	○ 43만ha('07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32.6만ha)			
사업내용	○ 농지매매사업, 농지임대차사업, 농지교환분합사업			
지원형태	○ 융자(농지매매, 농지교환분합 : 연리 2%, 농지임대차 : 무이자)			
사업수행 주체	○ 한국농촌공사			
사업비	(단위 : 억원)			
	사업명	'06	'07	'08
	○ 농지규모화사업	4,341	3,400	3,400
	· 농지매매사업	2,856	2,100	2,390
	· 농지임대차사업	1,458	1,273	991
· 농지교환분합사업	27	27	19	

□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

사업목적	○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,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 지원			
사업기간	○ '97 ~ 계속('07년까지 기투자액 : 1조 944억원)			
사업내용	○ 지원조건 : 개발비의 75%이내, 최대 3년 6억원까지 지원 ○ 개발 성공시 출연금의 20%를 기술료로 회수(3년 분할)			
사업수행 주체	○ 한국산업기술평가원			
사업비	(단위: 억원)			
	사업명	'06	'07	'08
	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	1,596	1,995	2,34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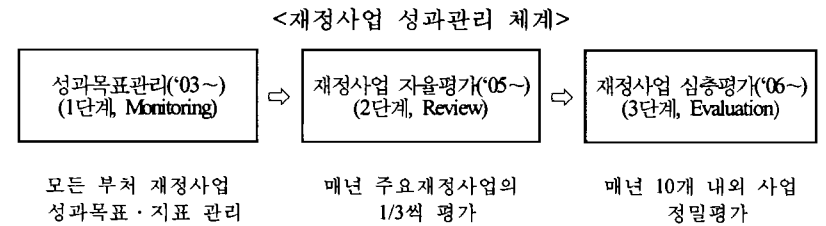
□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

사업목적	○ 부실 일선수협의 경영정상화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			
사업기간	○ '03~ '10년			
총사업비	○ 4,797억원('07년까지 기투자액: 2,663억원)			
사업내용	○ '10년까지 순자본비율 0% 달성에 필요한 지원소요금액(8,386억원)의 80%(6,709억원)의 금액에 대한 연간 이자(7.2%) 부담 ○ 국고 70%,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0%, 일선수협 20%			
사업수행 주체	○ 수협중앙회			
사업비	(단위: 억원)			
	사업명	'06	'07	'08
	일선수협 경영개선지원사업	634	411	43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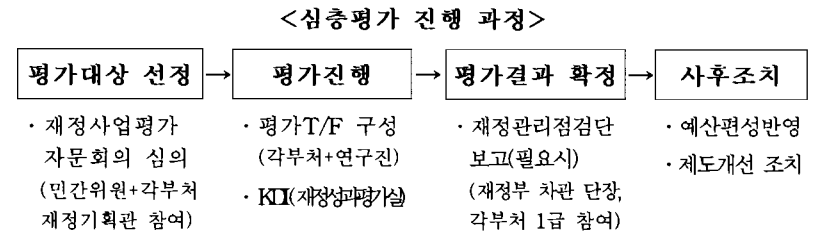
참고 2 재정사업 심층평가 개요

□ **(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)** 재정운동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개별 사업들의 운영성과를 깊이 있게 분석·평가(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)

○ 심층평가는 성과목표관리제도(Monitoring), 재정사업자율 평가(Review)와 함께 **재정성과관리의 핵심수단**으로 운영



□ **(심층평가 진행과정)** 사업평가의 객관성·전문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 외부기관인 KDI를 통해 평가 수행



□ **(심층평가 추진체계)** 기획재정부의 성과관리심의관을 추진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및 관련부처 담당자, KDI의 연구진 등으로 **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단**을 구성하여 심도있고 객관적인 심층평가 실시